

연구활동지원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”)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전임교원 및 교직원
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교내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
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원칙) ① 교내연구 지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기 위하
여 교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, 교내연구과제 연구비와 연구지원금
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내연구과제는 공개모집방식으로 선정하되, 특별한 경우 대학에서 연구책임자를 지정
할 수 있다.

③ 연구지원금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교내연구 종류 및 정의) ① 교내연구는 정책개발 연구과제와 자유공모 연구과제로 구분한다.

② 정책개발 연구과제라 함은 본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
정책 과제를 지정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를 말한다.

③ 자유공모 연구과제라 함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연구풍토 조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
에 따라 공모하여 지원하는 연구를 말한다.

제 2 장 교내연구비

제4조(신청) ① 교내연구 연구과제는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.

② 교내연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 교내연구 제안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.

③ 제안된 교내연구 과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내용을 공개하고, 교내연구
의견수렴 및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자 선정) ① 제4조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총장은 보직교수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
상자를 선정한다.

② 교내연구과제에 선정된 자는 신청기간에 교내연구 수행 신청서와 연구비 사용계획서를
제출한다.

제6조(연구기간) ① 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당해연도 연구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 할 경우 보직교수의 심사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간을 연
장 할 수 있다.

제7조(교내연구비 지원) 교내연구비 지원은 연도별 사업예산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비 관리) ① 연구비는 인건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비 사용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.

② 연구비 지급은 연구과제 결정 후 전기금 50%, 연구결과보고서 검수 후 후기금 50%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보고서 제출 및 정산)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 중간보고서와 교내연구비 정산서를 제출하며, 연구 종료 후 연구결과 보고서 및 교내연구비 정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구비 회수) 연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연구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
2.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때
3. 연구진행 보고를 소정 기일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때
4. 연구실적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때
5. 연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본 대학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
제11조(최종 연구결과물) ① 최종 연구결과물은 과제별 연구 종료 시 1개월 이내 산학협력단에 제출 한다.

② 완료 과제 평가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, 과제평가 결과는 성공, 실패로 구분하며, 실패 과제는 보완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.

③ 최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본 대학의 승인 하에 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다.

제12조(결과물의 귀속) 연구수행에 의한 결과물은 우리 대학 소유로 한다.

제 3 장 연구지원비 지원

제13조(지원범위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제전문 학술지
2. 전국규모 학회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

제14조(연구지원비 지원) ① 연구논문 1편당 지원 금액은 심사료 및 게재료를 포함하여 50만원 이하의 실비를 지급한다.

② 교내연구 참여 논문에 대해 연구지원비를 중복지원 할 수 없다.

③ 연구지원비는 세금 공제 후 지급한다.

제15조(신청) 연구지원비 지원대상은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하며, 연구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지원비를 신청서와 별쇄본(출력본), 연구실적 입력 확인 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세부사항) 교내연구 지원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